

20조엔을 넘어서고 있다. 이 대부잔고는 일본의 정부관계금융기관 중에서는 주택금융공고에 이어 두 번째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둘째, 저리의 공고자금을 들 수 있다. 공고의 대부이율은 설립부터 1965년까지는 모든 대부대상사업에 대해 조달비용에 기초하여 기준이율을 적용하였으나 공영기업의 추진과 그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1966년에 기준이율보다 저리인 특별이율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후 매년 대상사업이 확대되고 대부조건의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1990년에는 특별이율보다 한층 저리인 임시특별이율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결과 일반대부 전체에 차지하는 특별이율에 의한 저리의 대부액 비율은 98.5%에 달하고 있고 기준이율의 대부는 불과 1.5%에 불과하다.

셋째, 대부기간의 장기성을 들 수 있다. 공고자금의 대부기간은 정부자금 다름으로 길고 민간자금에 비해 매우 장기인 고정금리로 되어 있다. 즉 공고자금의 상환기간은 교통사업(차량구입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10년이상으로 되어 있고 최장기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도시고속철도사업에 대해서는 28년으로 공고대부의 평균대부기간은 25년(5년거

치)이다. 이것은 공영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민간자금의 상환기간이 통상10년을 최장기간인 것에 비해 가장 큰 특징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2) 대부원자의 특징

공고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대부를 행하기 위한 필요자금은 다른 정부관계 금융기관과 같이 자금운용부등에서 차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기업채권의 발행에 의해 민간(공모채) 및 지방 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연고채)로 조달하고 있다. 공모채에는 국내의 은행, 증권회사 등에 의해 구성되는 신디케이트단이 일괄하여 매수하는 국내채와 그리고 외국시장에서 발행되는 외화채가 있다.

또한 연고채는 1989년까지 지방공무원관련공제조합등에 의해 직접 인수를 받았으나 1990년부터는 전부 지방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고채 인수액의 약 20%에 상당하는 부분은 저리의 특별채로 발행되고 있다.

3) 업무체계의 특징